

 환경부 2018 청산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환경보건정책관 화학안전과
	출처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http://www.korea.kr , 검색어 화관법 자진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 ◇ 환경부 11월 22일부터 6개월 동안 자진 신고제도 운영
-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변경)허가 등 자진신고 대상
- ◇ 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1만 7,395개로 전체 2만 2,661개의 76.8%를 차지한다.
-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 및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 신고방법은 ‘화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
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허가) 및 영업
(변경)허가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 된다.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관법’ 또는 ‘유해
법’ 위반에 따른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의
후 정상 참작된다.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업체가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 다만, 유해화학물질 누출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이번 자진
신고 혜택에서 제외된다.

□ 환경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으로 ‘화관법’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화관법’이 시행되었다”면서,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업장
이 관련 법규에 대해 잘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여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
사항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의 해당 여부는 ‘국가법령정보
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및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를 참조하면 된다.

- 붙임 1.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안 내 문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유해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화관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유해법이 '15년 1월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아직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법과 화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기간('17.11.22~'18.5.21)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현행의 화관법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붙임의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는 화관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각종 신고·허가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 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보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7. 11. 22.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 붙임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환경부 공고 제2017 - 778호

법무부 공고 제2017 - 301호

**중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중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중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4.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1.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종전의 유해법이 '15년 1월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이에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법과 화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 제도 운영

2.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변경)허가 및 영업(변경)허가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3.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 혜택은?

- 유해법 또는 화관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검찰)

4. 자진신고 기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정보분석, 기획수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5.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 등 취급 당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등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은?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화관법)와 「유독물·관찰물질 지정」,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유해법) 참조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독물질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 관찰물질

-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허가물질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해야 하는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 제한물질

- 특정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금지물질

-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

-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영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

○ 취급시설

-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 유해성

-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 위해성

-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